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의안 번호	3253
----------	------

2025년 12월 22일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10. 20., 성홍제 의원(찬성의원 19명)
- 나. 회부일자 : 2025. 10. 23.
- 다. 상정일자 : 제333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 2025년 12월 22일 상정·의결(수정가결)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은 의정활동 지원과 시민의 전문정보 접근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시민 접근성과 정보공유 측면에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함.
- 현행 조례는 이용 대상을 학술연구 목적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시민이 비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또한, 「도서관법」 제42조에서 규정한 ‘도서관의 날’ 기념행사 등 독서문화 진흥 관련 내용이 현행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시민참여형 문화행사 추진의 근거가 부족함.

- 아울러, 도서관 이용자의 질서 준수 의무 및 위반 시 조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질서유지 조항이 부재하여 운영상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열린 도서관으로서, 온라인 열람 근거를 명확히 하고 비영리 목적의 시민 이용을 허용하며, 도서관의 날 기념행사 등 독서문화 진흥 조항을 신설하여 전문도서관의 공공성과 시민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민에게 공개 가능한 자료를 온라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5조제3항 신설).
- 도서관 이용 대상을 확대하여, 비영리 목적의 시민 이용을 허용하도록 개정함 (안 제8조제4호 개정).
- 「도서관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날 등 기념행사 및 독서문화 진흥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3조의2 신설).
- 이용자의 질서 준수 의무와 위반 시 이용 제한 근거를 명문화(안 제14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서관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로 갈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5. 10. 28.(화) ~ 2025. 11. 1.(토) (5일간)

나) 예고결과 : 없음

2) 소관부서 의견조회 : 수정동의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최현재)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본 개정안은 전문도서관의 공공성과 시민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민에게 공개 가능한 자료의 온라인 열람 및 비영리 목적의 도서관 이용을 허용하는 한편, 도서관의 날 등 독서문화 진흥 활동 및 도서관 이용 질서 유지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2 온라인 열람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 개정안 제5조는 제3항을 신설하여,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각 과 및 전문위원회(이하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 중 시민에게 공개 가능한 자료는 온라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개정안 제5조제3항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자료의 제출) ① · ② (생 략)	제5조(자료의 제출) ① ·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③ 시민에게 공개 가능한 자료는 온라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u>

- 부서가 전문도서관에 제출한 자료 중 공개 가능한 자료에 한하여 온라인 열람을 허용하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정보 접근 방식을 다변화하고 시간·공간적 제약 없이 전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전문도서관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임.

- 다만, 현행 조례 제5조는 부서가 생산한 자료의 제출 의무를 규정하는 조문인 점을 고려할 때, 공개 가능한 자료에 대한 온라인 시민 열람 규정은 열람·대출에 관해 규정하는 제9조에서 다루는 것이 조문 체계상 적절해 보임.
- 또한, 서울특별시의회가 저작권을 보유한 발간물의 원문만 공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공개 가능한 제출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음.

< 개정안 제5조제3항에 대한 수정의견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5조(자료의 제출)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5조(자료의 제출)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시민에게 공개 가능</u> <u>한 자료는 온라인</u> <u>을 통해 열람할 수</u> <u>있도록 한다.</u>	제5조(자료의 제출)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u><삭 제></u>
제9조(열람 및 대출) ① 자료의 열람장소는 도서관으로 한정하 며, 열람·대출 시간 은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에 따른 공무원의 근 무시간으로 한다. 다 만, 의회의 회기 중 에는 의원 및 의회 소속 직원에 한정하	제9조(열람 및 대출) ① · ② (생 략)	제9조(열람 및 대출) ① · ② (현행과 같음)

<p>여 열람·대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② 자료의 대출은 제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무처장의 허가를 받아 대출할 수 있다.</p>	<p><u><신 설></u></p>	<p><u><신 설></u></p>	<p>③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시민에게 공개 가능한 자료는 온라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p>
---	---------------------------	---------------------------	---

3 이용자 범위의 구체화(안 제8조제4호)

- 개정안 제8조제4호는 일반시민의 비영리적 목적 이용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제8조제4호 일부를 “비영리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민”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비영리 목적의 시민 이용을 허용함으로써 전문도서관을 시민과 전문정보를 공유하는 공공의 공간으로 확장하려는 것이나, 현재도 실무상 시민의 출입·열람이 제한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

< 개정안 제8조제4호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이용자의 범위) 도서관 이용자 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 략) 4. 그 밖에 학술연구 <u>등의 목적으로</u> 자료를 이용하려는 사람</p>	<p>제8조(이용자의 범위) ----- -----.</p> <p>1. ~ 3. (현행과 같음) 4. ----- 등 <u>비영리목적으</u> 로 이용하려는 시민</p>

4 도서관의 날 등 독서문화 진흥(안 제13조의2 신설)

- 개정안 제13조의2는 사무처장이 도서관 관련 기념일에 맞추어 기념행사나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도서관법」 제42조제2항¹⁾은 도서관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도서관의 날 기념행사 등 독서문화 진흥 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참여형 문화행사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 전문도서관의 문화적 기능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가 있겠음.

1)제42조(도서관의 날) ① 도서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정하며, 도서관의 날부터 1주간을 도서관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안 제13조의2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13조의2(도서관의 날 기념행사 등)</u></p> <p><u>사무처장은 「도서관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날 등 도서관 관련 기념일에 맞추어 시민의 도서관 이용을 촉진하고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기념행사나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u></p>

5 이용자의 질서 준수 의무 및 위반 시 이용 제한(안 제14조 신설)

- 개정안 제14조는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자에게 질서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사무처장은 이를 위반한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 현행 조례에는 도서관 이용자의 질서 준수 의무 및 위반 시 조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도서관의 질서 유지 및 이용자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 발생 시 대응에 한계가 있음.
- 본 개정안은 이용자의 준수사항과 위반 시 이용 제한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도서관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다수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규율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음.
- 다만, 개정안 제14조의 경우 이용자의 질서 준수 의무와 사무처장의 이용 제한 규정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어 문장 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수정의견을 제시함.

< 개정안 제14조에 대한 수정의견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신 설>	<u>제14조(질서유지) 이용</u> <u>자는 도서관의 질서</u> <u>를 준수하여야 하</u> <u>며, 위반 시 이용을</u> <u>제한할 수 있다.</u>	제14조(질서유지) ----- ----- -- <u>사무처장은 질서</u> <u>위반 -----.</u>

5 종합검토

-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에게 공개 가능한 자료의 온라인 열람과 비영리 목적의 도서관 이용을 허용하고, 도서관의 날 등 독서문화 진흥 활동 및 이용자의 질서 준수 관련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다만, 조례의 완결성을 위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례의 조문 체계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일부 수정사항이 발견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안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시민 공개 가능 자료에 대한 온라인 열람 근거를 자료 열람을 규정하는 조문에 신설하여 조례의 체계 정합성을 유지하는 한편, 이용자의 질서 준수 의무와 사무처장의 이용 제한 규정의 행위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실무 적용 과정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함.

나. 수정의 주요내용

- 시민 대상 온라인 열람 가능 자료를 구체화하고 조문 위치를 수정함 (제9조제3항 신설).
- 질서위반에 대한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함(안 제14조).

8. 심사결과 : 수정 가결

(재적의원 13명, 출석위원 7명, 찬성 7명)

9.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253
----------	------------

제 안 년 월 일 : 2025년 12월 22일
제 안 자 : 운영 위원장

1. 수정이유

- 시민 공개 가능 자료에 대한 온라인 열람 근거를 자료 열람을 규정하는 조문에 신설하여 조례의 체계 정합성을 유지하는 한편, 이용자의 질서 준수 의무와 사무처장의 이용 제한 규정의 행위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실무 적용 과정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민 대상 온라인 열람 가능 자료를 구체화하고 조문 위치를 수정함(제9조제3항 신설).
- 질서위반에 대한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함(안 제14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도서관법」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대상사유서로 갈음
- 기타사항 : 수정안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시민에게 공개 가능한 자료는 온라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안 제14조 중 “위반”을 “사무처장은 질서 위반”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수정안 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5조(자료의 제출) ① · ② (생 략) <u><신 설></u></p>	<p>제5조(자료의 제출)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시민에게 공개 가 능한 자료는 온라인</u> <u>을 통해 열람할 수 있</u> <u>도록 한다.</u></p>	<p>제5조(자료의 제출)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u><삭 제></u></p>
<p>제8조(이용자의 범위) 도서관 이용자의 범위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자료 를 이용하려는 사람</p>	<p>제8조(이용자의 범위) - ----- -----.</p>	<p>제8조(이용자의 범위) (개정안과 같음)</p>
<p>제9조(열람 및 대출) ① 자 료의 열람장소는 도서관 으로 한정하며, 열람· 대출시간은 「서울특별 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 례」에 따른 공무원의 근 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의회의 회기 중에는 의원 및 의회 소속 직원에 한 정하여 열람·대출시간 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자료의 대출은 제8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p>	<p>제9조(열람 및 대출) ① · ② (생 략)</p>	<p>제9조(열람 및 대출) ① · ② (개정안과 같 음)</p>

<p>해당하는 사람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무처장의 허가를 받아 대출할 수 있다.</p>	<p><u><신 설></u></p>	<p><u>③ 제5조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시민에게 공개 가능한 자료는 온라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u></p>
<p><u><신 설></u></p>	<p><u>제13조의2(도서관의 날 기념행사 등) 사무처장은 「도서관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날 등 도서관 관련 기념일에 맞추어 시민의 도서관 이용을 촉진하고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기념행사나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u></p>	<p><u>제13조의2(도서관의 날 기념행사 등) (개정안과 같음)</u></p>
<p><u><신 설></u></p>	<p><u>제14조(질서유지) 이용자는 도서관의 질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u></p>	<p><u>제14조(질서유지) ----- -- 사무처장은 질서 위반 -----.</u></p>
<p><u>제14조 (생략)</u></p>	<p><u>제15조 (현행 제14조와 같음)</u></p>	<p><u>제15조 (개정안과 같음)</u></p>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등의 목적으로 자료를 이용하려는 사람”을 “등 비영리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민”으로 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시민에게 공개 가능한 자료는 온라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도서관의 날 기념행사 등) 사무처장은 「도서관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날 등 도서관 관련 기념일에 맞추어 시민의 도서관 이용을 촉진하고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기념행사나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질서유지) 이용자는 도서관의 질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무처장은 질서 위반 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이용자의 범위) 도서관 이용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 략)</p> <p>4. 그 밖에 학술연구 <u>등의 목적</u> <u>으로 자료를 이용하려는 사람</u></p>	<p>제8조(이용자의 범위)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등 비영리</u> <u>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민</u></p>
<p>제9조(열람 및 대출) ① · ② (생 략)</p> <p><u><신 설></u></p>	<p>제9조(열람 및 대출) ① · ② (현행 과 같음)</p> <p>③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u>자료 중 시민에게 공개 가능한</u> <u>자료는 온라인을 통해 열람할</u> <u>수 있도록 한다.</u></p>
<p><u><신 설></u></p>	<p>제13조의2(도서관의 날 기념행사 등) 사무처장은 「도서관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날 등 도서관 관련 기념일에 맞 추어 시민의 도서관 이용을 촉 진하고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기념행사나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p>
<p><u><신 설></u></p>	<p>제14조(질서유지) 이용자는 도서 관의 질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무처장은 질서 위반 시 이용 을 제한할 수 있다.</p>
<p>제14조 (생 략)</p>	<p>제15조 (현행 제14조와 같음)</p>